

평등한 가족 : 양성평등사회의 기초

황 인 자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국가적 아젠다, 국정 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은 2003.2.25.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또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정과제에서는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과 함께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성의 지위수준에 주목하여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5대 차별로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차별을 선정하였으며, 성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대, 민간부문에서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정부에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1999.2.8.)하여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오고 있다.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대상분야가 공직부문에 제한되어 있고 정치참여 등은 저조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5.9% (181개국 중 102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5%(미국 45%, 캐나다 35%)).

둘째는 호주제 문제로, 호주제는 남아선호와 성비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최근 인구 및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넷째, 성매매 예방, 단속 및 처벌,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치관계부에 여성정치참여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여성채용을 확대한다. 둘째,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

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셋째, 성인지적 가족지표를 개발하고 가족정책 기본법을 제정한다. 넷째,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현장 상담센터 확충, 자활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사회복귀지원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한다.

이상과 같은 현실의 문제와 대안을 감안하면서, 여성부는 2003.4.4.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당면현안과제로 보육업무의 차질없는 이관 준비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호주제 폐지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또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개발을 핵심전략과제로 보고하였다. 여기에 가정과 관련이 많은 보육, 호주제, 가족정책, 이 세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간추려 본다.

1. 보육업무 이관(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제 ‘어린이는 나라가 키운다’ 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조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 가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그동안 저소득계층에 치중된 복지차원에서, 이제까지 개별가정 책임으로 밀어 놓았던 보육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이제는 부모가 함께 키운다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받는 것을 계기로 구상하고 있는 보육발전 청사진이다. 보육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로서, 그 내용은 보육료 50% 지원, 차등보육료제 보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및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정비 등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아, 장애아에 대한 보육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야간, 휴일, 방과후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주내용이다.

2. 호주제 폐지 추진

호주제의 폐해는 부계혈통만을 인정하여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초래하고,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출생성비 불균형을 조장하며, 父姓 강제로 이혼·재혼 가족 자녀의 姓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의 논의와 상황을 살펴보면,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합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가족의 약화, 전통문화 단절 등의 이유로 율립과 중·장년층 일부의 우려가 남아 있다. 현재 子의 父姓 강제 및 父家 입적, 호주 중심의 家 구성원리 등 민법의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헌법 제36조제1항(혼인

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2003.3.).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2001). 우리 정부는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으나 가족姓 선택의 자유권(제16조) 조항은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 여성부는 민·관 합동의 ‘호주제폐지기획단’ 구성을 제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고,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대안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3.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개발

여성부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여성·영유아·청소년 등 관련업무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정책으로 통합 추진하고자 한다. 여성·영유아·청소년 등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개발이 절실했던 배경에는 첫째, 출산 기피, 독신 선호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 →미래 노동력 감소, 사회보험 재정고갈 등 경제·사회적 불안정 초래 예상, 둘째, 핵가족화, 이혼·재혼 증가 등 가족 구조 및 형태의 급속한 변화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의 통합성과 안정성 유지기능 상실 우려, 셋째,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참여 기혼여성의 역할부담 가중 →남성의 가부장적 사고와 여성의 평등의식이 충돌,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역할 갈등 심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 가부장적 가족관계 → 민주적 가족관계
- ※ 핵가족 중심 획일적 정책 →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 ※ 여성중심의 가족보호노동 → 가족보호책임의 사회분담화

여성부는 전국가족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차원의 가족정책비전을 담은 ‘한국가족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금년 내 가칭 ‘평등가족기본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